

[별지 제6호 서식]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 문			업종 (대표업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귀사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의견제출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사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출처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제출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처 담당자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